

「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)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8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사회복지국장 황 은 채

나. 제안이유

-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을 통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및 일상생활·지역사회생활 지원을 제공하고, 보호자에게 필요한 단기 휴식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·심리적 고충 해소 가능함.

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

- 위 치 : 원평동 964-329
- 대 상 :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(300㎡) ※ 부지면적 812㎡
※ 이용 정원 10명 이내 / 종사자 7명 규모
- 사업기간 : 2025 ~ 2026년
- 총사업비 : 1,700백만원
※ 사업비 산출내역 : 공사비(건축공사 등) 1,568백만원
설계 및 감리비 132백만원
- 기준가격 : 1,700백만원
- 주요시설 : 거실, 조리실, 의무실, 사무실, 집단활동실, 화장실, 생활실, 비상재해대비시설 등
- 추진현황
 - 장애인 부모, 장애인 단체 등 관계자 간담회 : '24. 3. 14
 - 보건복지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기능보강비 신청 : '24. 4. 12.
 - 도비 예산지원 건의 방문 : '24. 4. 25
 -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건의 방문 : '24. 5. 7
 - 국회 예산지원 건의 방문 : '24. 8. 1
 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: '24. 9. 11
- 향후추진계획
 -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: '24. 10월
 - 건축 기획 용역 시행 : '25. 1~7월
 - 설계 및 BF 인증 : '25. 7~26. 5월
 - 공사 착공 : '26. 6월
 - 공사 준공 : '26. 12월

라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 분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1	300	1,700
	1.매입			
	2.교환 으로 취득			
	3.기타 취득	1	300	1,700

취득재산 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사 유	소유자	비고
	구분	소 재 지	수량					
계			300	1,700				
취득	건물	원평동 964-329	300	1,700	2026년	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	구미시	신축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동의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장애인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·심리적 고충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, 시유지를 활용하여 시설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.
- 집행기관에서는 시설 신축 공사, 운영 등을 위한 주변 주민들과의 사전협의, 시설 설계 등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 및 의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기존 도로가 좁으므로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노력 필요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